

서울지역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 조사결과

-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5개 부문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

2014년 2월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호

전화: 02-393-1457 팩스: 02-393-4449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orea Labour & Society Institute

www.ksli.org www.facebook.com/kslisedit

서울지역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 조사결과¹⁾

-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5개 부문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대학, 병원, 아파트 등 민간부문에서 청소, 경비, 식당 업무는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이 일반적이며,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와 매년 반복해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학교, 구청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대부분 직접고용 기간제인데, 구청은 퇴직금 지급, 무기계약 전환 등을 피하기 위해 1년 미만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상시 지속적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기간제 보호법 시행령의 각종 예외조항을 전면 손질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일소하고 임금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① 최저임금 인상, ② 임금교섭, ③ 생활임금 도입 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임금교섭이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지만, 노동조합이 거의 조직되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이밖에 직종별 표준임금을 정해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식당과 휴게실, 탈의실 공간, 근무시간 중 식사, 경조사, 명절 상여금은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노조 조합원의 임금이 비조합원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법대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근속년수도 길다. 노조 상급단체는 이러한 긍정적 노조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근로자참여와협력증진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다. 중소기업업체 비정규직은 대기업 정규직보다 조직화가 쉽지 않으므로, 노사협의회를 통해서라도 노동자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요구를 수렴해 나가야 한다.

1) 이 글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작성한 「서울지역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 조사연구(2013년 12월)」 보고서의 총론을 요약 정리한 글입니다.

서울지역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 조사결과

-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5개 부문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I. 실태조사 결과

1. 기초사항

○ 서울시 소재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5개 부문에서 무작위 추출한 비정규직 2,334명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근로조건과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했음. 각 부문별 응답자 수(분포)는 다음과 같음.

<표1> 응답자 수와 분포 (단위: 명,%)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493(21.1)	418(17.9)	492(21.1)	442(18.9)	489(21.0)	2,334(100.0)

○ 직업별로는 청소(25.8%), 경비(24.4%), 식당조리(15.8%), 사무직(12.7%), 전문직(10.5%), 기타(10.9%) 순임. 대학은 청소(54.8%), 병원은 청소(42.1%)와 식당(14.6%), 아파트는 경비(71.1%), 학교는 식당(54.3%), 구청은 사무직(33.9%)과 전문직(31.1%)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표2> 일자리 속성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직업(%)	전문직	0.6	2.4	0.4	17.4	31.1	10.5
	사무직	1.8	6.9	-	20.8	33.9	12.7
	식당	12.0	14.6	-	54.3	1.8	15.8
	청소	54.8	42.1	24.0	0.5	7.4	25.8
	경비	15.0	9.1	71.1	2.7	19.4	24.4
	기타	15.8	24.9	4.5	4.3	6.3	10.9

○ 고용형태별로는 간접고용인 파견/용역근로(53.3%)가 절반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기간제(34.4%), 무기계약직(11.2%)임. 민간부문인 대학(86.0%), 병원(83.7%), 아파

트(79.5%)는 간접고용(파견/용역근로)이 압도적이고, 공공부문은 직접고용이 압도적임. 즉 구청은 기간제(89.8%), 학교는 무기계약직(49.1%)과 기간제(39.8%)가 다수임.

<표3> 고용형태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고용형태 (%)	정규직	-	-	-	0.5	0.2	0.1
	무기계약직	2.8	4.3	0.6	49.1	2.0	11.2
	계약직(기간제)	9.9	10.5	19.1	39.8	89.8	34.4
	파견/용역근로	86.0	83.7	79.5	9.5	7.6	53.3
	기타	0.6	1.4	-	1.1	0.2	0.6

○ 여성은 63.8%로, 학교(88.7%), 구청(74.6%), 병원(71.3%), 대학(64.7%), 아파트(23.2%) 순임. 평균 연령은 52세(중위값 55세)로, 아파트(61.8세), 대학(57.3세), 병원(50.1세), 구청(45.0세), 학교(44.8세) 순임. 가구원수는 평균 3.1명으로, 학교(3.5명), 구청(3.3명), 병원(3.0명), 대학(3.0명), 아파트(2.7명) 순임.

<표4> 인적 속성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성별(%)	남성	34.7	28.7	76.6	11.3	25.4	36.1
	여성	64.7	71.3	23.2	88.7	74.6	63.8
연령	평균값(세)	57.3	50.1	61.8	44.8	45.0	52.0
가구원수	평균값(명)	2.99	3.04	2.70	3.53	3.28	3.10

2. 고용

○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有期) 근로계약 체결이 72.5%로, 구청(94.7%), 대학(90.1%), 아파트(71.7%), 학교(53.2%), 병원(47.1%) 순임.

○ 계약기간은 평균 1.15년(중위값 1년)으로, 계약기간 1년(63.4%)이 가장 많음. 대학(84.5%), 아파트(77.6%), 학교(75.7%), 병원(58.4%), 구청(28.3%) 순임.

- 구청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이 64.6%로, 서울시가 상시지속적 일자리로 판단하는 9~11월이 44.9%나 됨. 이는 기간제 보호법(무기계약 전환대상)과 근로기준법(퇴직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기간제 계약은 대부분 반복갱신(71.6%)이 이루어짐. 반복갱신 횟수는 평균 3.3회

(중위값 2회)이며, 최대 33회까지 반복갱신을 한 사람도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재계약(66.4%)이 이루어짐. 상시지속적 일자리가 대부분인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이 63~87%에 이릅니다. 그러나 구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 28.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만둠 25.4%, 재계약 기준 따라 연장여부 결정 24.3%임.

<표5>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단위:%)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계약기간	정함(%)	90.1	47.1	71.7	53.2	94.7	72.5
계약기간(년)	평균값	1.25	1.13	1.16	1.14	1.05	1.15
	중위값	1.00	1.00	1.00	1.00	.83	1.00
계약기간 계층(%)	1년미만	0.7	20.3	5.2	15.3	64.6	23.6
	6월미만	0.5	0.0	3.2	2.6	8.2	3.4
	6월	0.2	10.2	2.0	5.5	3.2	3.3
	7월	0.0	0.0	0.0	0.9	3.2	1.0
	8월	0.0	10.2	0.0	0.0	5.0	2.6
	9월	0.0	0.0	0.0	1.3	16.6	4.8
	10월	0.0	0.0	0.0	4.3	16.4	5.1
	11월	0.0	0.0	0.0	0.9	11.9	3.4
	1년	85.4	58.4	79.2	75.7	28.3	63.9
	1-2년미만	0.5	0.0	1.2	0.4	5.2	1.8
	2년	12.5	21.3	13.6	5.5	0.9	9.6
	2년초과	0.9	0.0	0.9	3.0	1.1	1.1
반복갱신	갱신(%)	86.7	72.1	73.9	72.3	54.6	71.6
갱신헌수	평균	4.12	2.95	3.49	2.88	2.24	3.27
	중위수	3.00	2.00	3.00	2.00	2.00	2.00
	최대값	33	13	20	13	15	33
재계약 결정방식(%)	특별한 사정없는 한 재계약	78.5	87.3	77.2	63.3	28.2	66.4
	특별한 사정없는 한 그만둠	0.8	1.9	1.4	3.6	25.4	6.8
	재계약 기준따라 연장여부 결정	11.0	9.8	10.8	14.7	24.3	14.2
	모르겠다	7.5	1.0	9.8	18.3	22.1	11.9

○ 현 직장에서의 계속근무 가능년수는 평균 6.8년(중위값 5년)으로, 희망년수 8.2년(중위값 8년)보다 1.4년(중위값 3년) 짧음.

- 계속근무 희망년수가 가능년수와 같거나 짧은 70.2%(희망년수≤가능년수)는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을 것임. 하지만 계속근무 가능년수가 희망년수보다 짧은 24.5%(희망년수>가능년수)는 고용불안을 크게 느낄 것임. 구청(46.8%), 아파트(24.2%), 병원

(18.9%), 대학(15.4%), 학교(15.4%) 순임.

○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18.2%임. 학교(29.6%), 구청(17.8%), 대학(16.8%), 병원(16.8%), 아파트(10.7%) 순임.

<표6> 계속근무 희망년수와 가능년수(단위: 년, %)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계속근무 희망년수	평균	8.76	7.74	6.85	9.72	7.95	8.18
	중위수	10.00	6.00	6.00	10.00	5.00	8.00
계속근무 가능년수	평균	8.13	6.97	5.93	8.71	4.31	6.77
	중위수	8.00	5.00	5.00	10.00	2.00	5.00
계속근무 희망/가능 년수비교 (%)	희망<가능	5.3	5.0	4.5	2.5	3.9	4.2
	희망=가능	72.0	75.8	63.2	76.7	44.8	66.0
	희망>가능	15.4	18.9	24.2	15.4	46.8	24.5
	무응답	7.3	0.2	8.1	5.4	4.5	5.3
정규직 전환 가능성 (%)	매우 높다	2.0	1.2	1.4	8.1	3.9	3.3
	약간 높다	14.8	15.6	9.3	21.5	13.9	14.9
	별로 없다	37.9	41.6	29.5	34.8	22.9	33.1
	전혀 없다	44.0	41.6	58.7	35.5	59.3	48.3

3. 노동시간

○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44.9시간(중위값 40시간)임. 아파트(55.0시간)와 병원(49.0시간)이 길고, 대학(41.6시간), 구청(40.5시간), 학교(39.1시간) 순임.

○ 중위값 기준으로 출근은 오전 8시, 퇴근은 오후 5시 30분이고,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직장에 있는 시간은 9시간임.

- 출근은 아파트가 6시로 가장 빠름. 대학과 병원은 7시, 학교는 8시, 구청은 9시.
- 퇴근은 아파트가 다음날 오전 6시고, 다른 부문은 당일 오후 5~6시임.

-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직장에 있는 시간은 아파트가 24시간으로 가장 길고, 병원은 10시간, 대학, 학교, 구청은 9시간임.

○ 1일 근로시간은 평균 9.2시간(중위값 8시간)이고, 휴게시간은 99분(중위값 60분).

- 중위값 기준으로 1일 근로시간은 아파트(11.4시간)가 길고, 다른 부문은 모두 8시

간. 1일 휴게시간은 아파트(3시간)가 길고, 다른 부문은 모두 1시간.

<표7> 주당 근로시간, 출퇴근시간과 1일 근로시간(단위: 시, 시간, 분)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주당 근로시간 (시간)	평균	41.6	49.0	55.0	39.1	40.5	44.9
	중위수	40.0	40.0	57.0	40.0	40.0	40.0
	최소값	1.0	11.0	14.0	15.0	20.0	1.0
	최대값	84.0	117.5	130.0	65.0	50.0	130.0
출근시간 (시)	평균	7.2	7.4	6.8	8.3	8.8	7.7
	중위수	7.0	7.0	6.0	8.0	9.0	8.0
	최소값	5.5	4.0	5.0	6.0	6.0	4.0
	최대값	10.5	21.0	9.0	13.0	10.0	21.0
퇴근시간 (시)	평균	16.9	18.3	26.7	16.9	17.8	19.4
	중위수	16.5	17.0	30.0	17.0	18.0	17.5
	최소값	6.0	11.0	12.0	14.0	14.0	6.0
	최대값	30.0	32.0	33.0	22.0	31.0	33.0
(퇴근-출근) 시간	평균	9.7	10.9	19.9	8.7	9.0	11.7
	중위수	9.0	10.0	24.0	9.0	9.0	9.0
	최소값	0.0	2.5	4.0	3.0	5.0	0.0
	최대값	24.0	24.0	24.5	14.0	24.0	24.5
출근시간이전 업무준비시간 (분)	평균	21.7	19.1	14.0	16.6	14.6	17.1
	중위수	20.0	20.0	10.0	10.0	10.0	10.0
	최소값	0.0	0.0	0.0	0.0	0.0	0.0
	최대값	90.0	40.0	80.0	40.0	50.0	90.0
1일 근로시간 (시간)	평균	8.7	9.7	11.8	7.8	8.0	9.2
	중위수	8.0	8.0	11.4	8.0	8.0	8.0
	최소값	6.0	2.5	2.0	3.0	4.0	2.0
	최대값	24.0	23.5	24.0	13.0	10.0	24.0
1일 휴게시간 (식사포함,분)	평균	96.7	67.2	208.9	54.8	61.4	98.8
	중위수	60.0	60.0	180.0	60.0	60.0	60.0
	최소값	0.0	0.0	0.0	0.0	30.0	0.0
	최대값	420.0	120.0	480.0	120.0	120.0	480.0

○ 주당 노동시간 만족도를 5점 척도로 계산하면 3.1점임. 공공부문인 구청(3.6점)과 학교(3.4점)가 높고, 민간부문인 대학(3.1점)과 병원(2.9점)은 보통이며, 장시간 노동이 관행인 아파트(2.6점)는 낮음.

○ 현재 주당 노동시간이 적당하다는 의견은 63.8%고, 지금보다 줄이고 싶다는 의견이 32.2%임. 이에 비해 늘리고 싶다는 의견은 3.3%밖에 안 됨.

- '지금보다 주당 노동시간을 줄이고 싶다'는 의견은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된 아파트(50.4%)가 많고, 대학(37.3%), 병원(33.7%), 학교(22.6%), 구청(16.2%) 순임.

<표8> 노동시간 만족도와 희망(단위: 점, %)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노동시간	만족도(1~5점)	3.07	2.93	2.56	3.40	3.63	3.12
노동시간 희망(%)	더 줄이고 싶다	37.3	33.7	50.4	22.6	16.2	32.2
	지금이 적당하다	60.2	61.5	44.5	74.2	79.3	63.8
	더 늘리고 싶다	1.0	4.8	3.0	3.2	4.5	3.3

○ 교대제 근무자는 28.8%. 이 가운데 76.0%가 2조 2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음.

- 교대제는 아파트(74.4%)가 가장 많고, 병원(45.0%), 대학(18.5%), 학교(3.4%), 구청(2.5%) 순임. 교대제 유형 가운데 2조 2교대제가 모든 부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 아파트(93.4%), 대학(63.7%), 학교(53.3%), 병원(52.1%), 구청(41.7%) 순임.

<표9> 교대제 실시 여부와 유형(단위:%)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교대제 실시	비율(%)	18.5	45.0	74.4	3.4	2.5	28.8
교대제 유형 (%)	2조2교대	63.7	52.1	93.4	53.3	41.7	76.0
	3조3교대	18.7	22.9	-	-	25.0	9.4
	3조2교대	1.1	12.2	0.3	6.7	8.3	4.0
	4조3교대	-	12.2	-	-	-	3.4
	기타	8.8	0.5	6.3	40.0	25.0	4.5
	무응답	7.7	-	-	-	-	2.7

○ 연장근로를 하는 사람은 33.2%로, 대학(55.4%), 병원(49.3%), 아파트(24.2%), 구청(20.7%), 학교(17.4%) 순임.

- '연장근로수당을 거의 받지 못 한다'(36.2%)가 가장 많고, '연장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서 받는다'(34.6%), '정해진 시간 월정액(또는 정률)으로 받는다'(14.3%), '일부 시간만 받는다'(7.2%) 순임.

- '연장근로수당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병원(59.2%), 학교(42.1%), 아파트(36.4%), 대학(27.1%), 구청(5.0%) 순이고, '연장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서 받는다'는 구청(59.4%), 대학(45.4%), 학교(42.1%), 병원(22.3%), 아파트(6.5%)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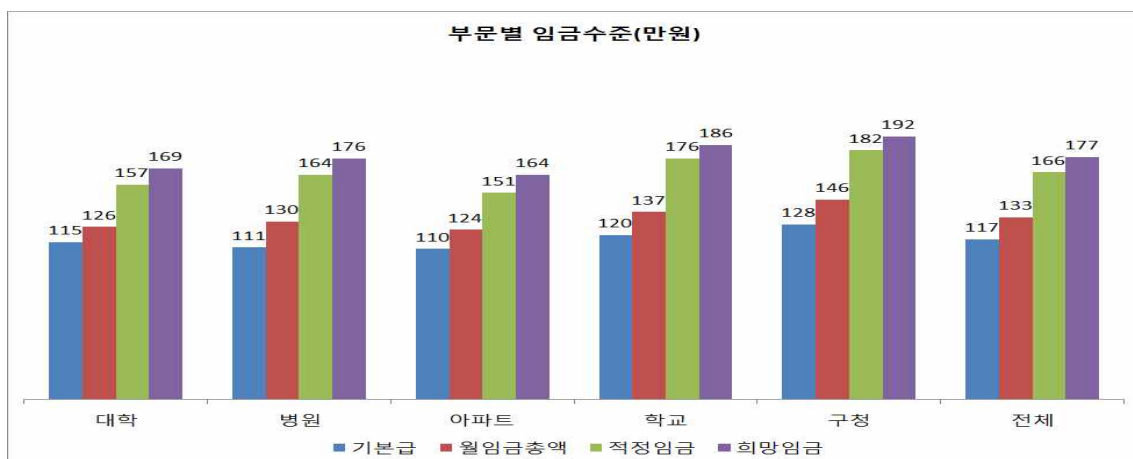
<표10> 연장근로 실시와 연장근로수당 수령 여부(단위:%)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연장근로실시	비율(%)	55.4	49.3	24.2	17.4	20.7	33.2
연장근로수당수령(%)	거의 받지 못 함	27.1	59.2	36.4	42.1	5.0	36.2
	일부시간만 받음	8.3	4.9	5.6	6.6	11.9	7.2
	정해진 시간 월 정액(정률) 받음	10.9	12.6	26.2	2.6	21.8	14.3
	시간 정확히 계산해서 받음	45.4	22.3	6.5	42.1	59.4	34.6
	기타	8.3	1.0	25.2	6.6	2.0	7.6

4. 임금

○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기본급은 117만원, 월임금총액은 133만원, 적정임금은 166만원, 희망임금은 177만원.

- 부문별 월임금총액은 구청(146만원), 학교(137만원), 병원(130만원), 대학(126만원), 아파트(124만원) 순임. 월임금총액은 124~146만원이고, 적정임금은 151~182만원.



○ 상여금 받는 사람은 23.3%에 불과.

- 상여금 지급시기는 연2회(68.8%)가 가장 많고, 매월 일정액(16.7%), 연1회(8.6%), 정해져 있지 않음(5.9%) 순임.

- 상여금 지급률은 평균 59%로, 아파트(101%), 구청(99%), 병원(71%), 대학(52%), 학교(37%) 순임.

<표11> 상여금 지급(단위:%)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상여금 지급	지급(%)	32.0	33.0	9.1	39.1	6.1	23.3
상여금 지급시기 (%)	년 1회	6.3	4.3	11.1	14.5	3.3	8.6
	년 2회	74.7	47.1	66.7	80.9	70.0	68.8
	매월 일정액	16.5	34.8	20.0	2.3	13.3	16.7
	정해 있지 않음	2.5	13.8	2.2	2.3	13.3	5.9
상여금 지급률 (%)	평균	52	71	101	37	99	59
	중위수	19	50	100	10	50	25
	최소값	4	10	1	0	0	0
	최대값	200	210	350	200	400	400

○ 근속년수가 늘어나면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는 곳은 33.7%.

- 학교(48.2%), 아파트(39.2%), 병원(38.5%), 구청(24.9%), 대학(19.9%) 순임.

○ 현재 소속된 부서나 팀에서 정규직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35.9%고, 함께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63.3%임.

- 구청(67.9%)과 학교(52.5%)는 정규직과 함께 근무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인데, 대학(24.5%), 병원(18.2%), 아파트(15.9%)는 16~25%로 그 비중이 낮음. 이러한 차이는 구청과 학교는 직접고용 기간제고, 대학, 병원, 아파트는 간접고용 용역근로가 다수인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큼.

○ 정규직과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 가운데 정규직과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은 47.6%. 이 가운데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사람은 22.6%고, 다른 수준의 임금을 받는 사람은 76.7%임.

<표12> 정규직과 동등대우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정규직과 같은 부서 함께 근무	함께 근무	24.5	18.2	15.9	52.5	67.9	35.9
	아니오	74.0	81.8	82.1	47.5	32.1	63.3
함께 근무한다면 정규직과	같은 일	71.9	63.2	50.0	42.2	38.3	47.6
	다른 일	26.4	36.8	46.2	57.8	61.7	51.8
같은 일 하고 있다면 정규직과	같은 수준 임금	2.3	35.4	82.1	33.7	4.7	22.6
	다른 수준 임금	96.6	64.6	12.8	66.3	95.3	76.7

5. 기타 노동조건

가. 사회보험

○ 직장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92.2%), 고용보험(87.6%), 산재보험(83.6%), 국민연금(78.6%) 순임. 공공부문인 학교와 구청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이 민간부문인 대학, 병원, 아파트보다 높음.

- 사회보험 미가입 이유는 '잘 모르겠다'(67.9%)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임금 공제 부분이 부담되어서'(17.6%), '사업주 요구로'(8.5%), '국가의 보험정책 신뢰하지 않아서'(4.2%), '신용불량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1.8%) 순임.

<표13> 사회보험 가입현황(단위:%)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고용보험	가입	90.9	81.1	75.6	95.5	94.7	87.6
국민연금	직장가입	82.8	74.2	56.9	92.3	87.7	78.6
	지역가입	1.8	8.9	1.4	2.9	0.2	2.9
건강보험	직장가입	93.5	79.4	94.1	93.9	98.2	92.2
	지역가입	2.6	8.9	2.0	3.2	-	3.2
산재보험	가입	89.0	81.1	68.9	86.4	92.4	83.6
사회보험 직장가입 안한이유	사업주 요구로	5.6	15.8	9.4	1.4	4.4	8.5
	임금공제 부분이 부담 되어서	30.6	38.3	4.7	29.6	1.1	17.6
	신용불량 등 개 인적인 사정으로	-	4.2	0.9	2.8	1.1	1.8
	국가의 보험정책 신뢰하지 않아서	4.2	17.5	-	-	-	4.2
	잘 모르겠다	59.7	24.2	85.0	66.2	93.4	67.9

나. 휴가

○ 법정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한다는 51.0%로, 구청(69.7%), 학교(58.4%), 대학(58.4%), 아파트(41.1%), 병원(24.4%) 순임.

○ 휴가로 생긴 업무 공백은 '남아 있는 동료들이 대신 한다'(57.5%)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내가 복귀하여 일을 처리한다'(26.3%), '회사가 알아서 대체인력을 구한다'(12.4%), '내가 사비를 들여 대체인력을 구해 놓고 휴가를 간다'(3.1%) 순임.

- 특히 문제가 되는 ‘내가 사비를 들여 대체인력을 구해 놓고 휴가’를 가는 경우는 아파트(9.4%)와 학교(5.8%)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음.

○ 법정 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하지 못 하는 이유는 ‘관리자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46.2%), ‘동료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30.1%), ‘추가 임금을 받기 위해서’(12.4%) 순임.

<표14> 휴가 사용(단위: %)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법정휴가	자유사용	58.4	24.4	41.1	58.4	69.7	51.0
휴가시 업무공백 처리방법	남아있는 동료들이 대신 한다	74.0	65.7	66.3	35.3	52.8	57.5
	회사가 알아서 대체인력 구한다	4.2	30.4	8.4	27.5	5.0	12.4
	내가 사비 들여 대체 인력 구해 놓고 휴가 간다	0.7	1.0	9.4	5.8	-	3.1
	내가 복귀하여 일을 처리한다	19.1	2.9	14.9	31.4	42.2	26.3
	관리자(상사)가 허락하지 않아서	38.3	51.6	57.7	20.7	55.4	46.2
자유로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동료가 힘들어져 눈치보여	40.3	25.0	27.5	44.6	14.2	30.1
	추가임금 받기 위해	10.4	21.5	1.1	19.0	8.8	12.4
	기타	8.0	1.9	9.2	15.2	21.6	9.5
	무응답	3.0	-	4.6	0.5	-	1.8

다. 산재처리

○ 산업재해를 경험한 사람은 6.7%로, 대학(10.8%), 아파트(9.6%), 학교(7.0%), 구청(3.7%), 병원(1.9%) 순임.

○ 산업재해 경험자 가운데 산재 처리를 받지 못 한 사람은 63.1%임. 산재 처리를 받지 못 한 이유는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까봐 신청하지 못 했다’(19.7%), ‘산재 신청 방법 등을 몰라서 못 했다’(16.6%), ‘산재 신청을 했으나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적용받지 못 했다’(10.8%), ‘회사에서 산재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10.8%), ‘회사가 공상처리를 해주었다’(5.1%) 순임.

<표15> 산업재해 및 산재신청 경험(단위:%)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산재경험	경험있다	10.8	1.9	9.6	7.0	3.7	6.7
산재신청	재계약 영향 미 칠까봐 신청하지 못했다	11.3	87.5	21.3	12.9	22.2	19.7
	신청했으나 회사 가 받아들이지 않아 적용못받음	9.4	-	17.0	6.5	11.1	10.8
	회사가 산재적용 대상이 아니라해 신청하지 않았다	13.2	-	10.6	3.2	22.2	10.8
	산재신청방법 등 을 몰라 못했다	20.8	-	17.0	9.7	22.2	16.6
	회사가 공상처리 를 해 주었다	5.7	-	8.5	3.2	-	5.1
	산재신청해서 잘 처리되었다	39.6	12.5	25.5	64.5	22.2	36.9

라. 개선방향

○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항은 임금인상(43.9%), 고용안정(36.3%), 자유로운 휴가사용(8.1%), 인격적 대우보장(6.5%) 순임.

- 구청만 고용안정(45.8%)이 임금인상(43.4%)보다 많고, 다른 부문은 임금인상이 고용안정보다 많음. 이는 그만큼 저임금에 대한 불만이 광범함을 말해줌.

<표16> 현재 비정규직으로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점(단위:%)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개선사항 (1~2순위)	임금인상	46.0	41.4	42.7	45.9	43.4	43.9
	고용안정	37.9	32.0	28.9	36.5	45.8	36.3
	자유로운 휴가사용	5.9	15.5	12.2	5.3	2.6	8.1
	출산휴가육아휴직	0.1	0.5	0.6	1.2	1.1	0.7
	보육시설	0.1	0.3	0.2	0.5	0.0	0.2
	인격적 대우보장	6.7	8.7	10.0	4.9	2.1	6.5
	교육훈련	1.1	1.4	2.6	2.5	3.3	2.2
	기타	1.0	0.5	0.4	2.4	1.0	1.1

○ 용역(또는 하청)업체 노동자 개선방향은 ‘원청(기관)에서 직접 고용’(67.5%)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현 용역업체가 정규직으로 고용’(16.1%), ‘현 용역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되 임금 노동시간 등 처우개선’(15.8%) 순임.

<표17> 용역/하청 노동자 개선방향(단위: %)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개선방향	원청 직접 고용	76.3	57.7	49.2	76.5	77.3	67.5
	용역업체 정규직 고용	10.5	26.8	21.1	9.7	13.1	16.1
	용역업체 비정규 직고용, 처우개선	11.4	15.6	28.3	13.8	9.6	15.8
	무응답	1.8	-	1.4	-	-	0.7

6. 노사관계

○ 노동조합 조직률은 23.5%로, 학교(39.4%), 병원(34.9%), 대학(34.1%), 아파트(11.0%), 구청(1.4%) 순임.

○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16.5%)는 얼마 안 됨. ‘잘 모르겠다’(43.8%)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구성되어 있지 않다’(32.3%), ‘구성은 되어 있으나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6.4%) 순임.

<표18>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단위:%)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노동조합 유무와 가입	노동조합이 없다	40.4	31.6	81.9	29.9	56.2	48.9
	노조 있으나 가입대상 아니다	18.3	24.9	3.5	12.4	39.5	19.7
	노조있고 가입대상 이나 가입 안 함	6.1	8.6	2.2	17.6	2.9	7.2
	노조 가입	34.1	34.9	11.0	39.4	1.4	23.5
	잘 운영되고 있다	21.1	38.8	3.5	16.5	5.9	16.5
노사협의회	구성되어 있으나 잘 운영되지 않음	7.7	12.4	6.1	4.3	2.2	6.4
	구성 안 됨	28.6	17.9	56.1	28.1	28.0	32.3
	잘 모르겠다	38.7	30.9	33.5	51.1	63.8	43.8

7. 저축과 부채

○ 저축 있는 사람은 53.7%고, 부채 있는 사람은 40.9%. 저축 있는 사람들의 저축액은 평균 1,117만원(중위값 500만원)이고, 부채 있는 사람들의 부채액은 평균 5,846만원(중위값 3,000만원).

○ 부채상환원리금은 월평균 40만원(중위값 30만원)으로, 구청(50만원), 학교(44만원), 대학(43만원), 아파트(34만원), 병원(31만원) 순임.

- 부채상환 원리금에 대해 느끼는 부담 정도를 5점 척도로 계산하면 평균 4.1점(중위값 4.0점). ‘매우 부담된다’가 32.7%, ‘부담되는 편이다’가 47.6%로, 80.3%가 부담을 느끼고 있음.

- 부채를 제1금융권에서 조달한 사람이 70.3%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는 제2금융권(16.8%), 친척이나 친지(13.4%) 순임.

<표19> 저축과 부채 현황(단위: %, 만원, 억원, 점)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저축유무	있음(%)	43.0	64.1	55.7	57.2	50.3	53.7
저축액(만원)	평균	1,045	777	1,665	958	969	1,117
	중위수	100	410	1,200	300	300	500
부채유무	있음(%)	42.0	28.9	34.3	51.4	47.0	40.9
부채총액(억원)	평균	6,080	3,121	3,940	6,403	8,654	5,846
	중위수	3,000	2,000	2,000	3,000	5,000	3,000
월상환원리금(만원)	평균	43.40	23.26	33.53	44.08	50.41	39.63
	중위수	30.00	20.00	20.00	30.00	40.00	30.00
원리금상환부담(5점척도)	평균	4.14	4.04	4.21	4.05	4.09	4.11
	중위수	4.00	4.00	4.00	4.00	4.00	4.00
부채상환원리금부담(%)	매우 부담된다	31.9	24.8	39.1	26.4	39.1	32.7
	부담되는 편이다	49.3	58.7	42.0	55.5	36.5	47.6
	그저 그렇다	14.5	12.4	14.2	15.0	18.7	15.3
	부담없는 편이다	1.9	4.1	2.4	3.1	5.7	3.5
	무응답	2.4	-	2.4	-	-	0.9
부채조달기관(복수응답,%)	제1금융권	67.1	64.5	66.3	70.9	78.7	70.3
	제2금융권	17.4	21.5	13.6	17.2	15.7	16.8
	대부업체	1.4	1.7	1.8	-	0.9	1.0
	친척/친지	13.0	11.6	25.4	12.3	7.0	13.4
	일하는 회사	0.5	-	1.2	2.2	0.4	0.9
	기타	2.4	0.8	0.6	1.8	1.7	1.6

8. 노후준비

○ 노후 대비 경제적 준비수준이 적정(9.9%)하거나 충분(1.7%)하다는 11.6%밖에 안 되고, ‘매우 부족’(31.7%)하거나 ‘부족한 편’(56.6%)이다가 88.3%임. 5점 척도로 계산하면 평균 1.8점(중위값 2.0점).

○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은 55.1%. 노후준비 수단은 국민연금(39.5%), 사적연금(19.7%),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18.0%), 퇴직금(6.3%) 순임.

○ (중위값 기준으로) 예상은퇴연령은 65세, 희망은퇴연령도 65세임.

- 예상은퇴연령은 아파트(70세), 대학(69세), 병원(65세), 구청(61세), 학교(60세) 순.

- 희망은퇴연령은 아파트(70세), 대학(70세), 병원(65세), 구청(65세), 학교(60세) 순.

○ (중위값 기준으로) 걱정된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 매달 필요한 자금은 200만원인데, 은퇴 후 매달 마련할 수 있는 소득은 100만원.

- 걱정 노후생활 필요자금은 병원, 학교, 구청은 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학(170만원), 아파트(150만원) 순임. 은퇴 후 매달 마련할 수 있는 소득은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이 100만원이고, 대학은 80만원임.

<표20> 노후준비 (단위:%,점)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노후경제적 준비적정 (5점척도)	평균	1.67	1.99	1.88	1.88	1.69	1.82
	중위수	2.00	2.00	2.00	2.00	2.00	2.00
노후경제적 준비적정 (%)	매우 부족하다	42.4	18.7	25.6	27.8	41.5	31.7
	부족한 편이다	49.1	65.8	61.8	59.3	48.5	56.6
	적정하다	6.7	13.4	10.6	10.4	9.2	9.9
	충분한 편이다	1.0	2.2	1.4	2.0	0.8	1.5
	매우 충분하다	0.2	-	0.2	0.5	-	0.2
노후준비(%)	준비하고 있다	54.4	57.9	48.6	72.9	44.2	55.1
노후준비 수단 (1~2순위,%)	국민연금	42.9	42.1	33.3	41.6	35.9	39.5
	사적연금	13.8	20.0	20.3	20.5	25.0	19.7
	퇴직금	9.5	3.9	7.1	7.3	2.8	6.3
	예금, 적금, 저축 성보험	16.8	22.1	16.5	16.9	18.1	18.0
	부동산 운용	4.5	1.2	10.9	2.6	4.9	4.7
	주식, 채권 등	0.6	-	1.7	0.2	0.7	0.6
	기타	1.3	-	1.3	1.6	4.4	1.6
	무응답	10.6	10.5	9.0	9.3	8.3	9.6
예상은퇴연령	평균	67	63	69	60	62	64
	중위수	69	65	70	60	61	65
희망은퇴연령	평균	68	64	71	61	64	66
	중위수	70	65	70	60	65	65
적정노후생활 자금(만원)	평균	170	182	158	225	228	192
	중위수	170	200	150	200	200	200
은퇴후가능소 득규모(만원)	평균	84	99	96	121	114	102
	중위수	80	100	100	100	100	100

9. 정당 지지도와 18대 대선 투표

○ 현재 지지정당은 없다(33.2%), 새누리당(24.9%), 무응답(24.2%), 민주당(16.6%) 순이며,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 지지는 모두 합쳐도 1.0%.

○ 18대 대통령 선거 때 투표를 한 사람은 67.0%로, 박근혜(36.4%), 문재인(22.3%) 순임. 강지원, 김순자, 김소연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은 모두 합쳐도 0.5%.

<표21> 정당 지지와 18대 대선 투표(단위: %)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지지정당	새누리당	21.9	38.0	35.8	15.4	14.5	24.9
	민주당	17.2	22.7	20.7	12.7	10.2	16.6
	통합진보당	1.0	1.0	0.6	0.7	0.4	0.7
	정의당	-	0.2	0.2	-	-	0.1
	노동당	-	0.5	0.2	0.5	-	0.2
	지지정당 없음	22.7	37.1	30.9	29.6	46.2	33.2
	무응답	37.1	0.5	11.6	41.2	28.6	24.2
투표여부	예	58.8	78.7	78.7	53.8	65.4	67.0
	아니오	3.2	20.8	13.6	6.6	8.2	10.2
	무응답	37.9	0.5	7.7	39.6	26.4	22.8
투표후보	박근혜 후보	34.3	49.8	47.2	23.1	28.4	36.4
	문재인 후보	18.9	27.5	24.6	18.1	22.9	22.3
	강지원 후보	0.4	0.2	0.2	0.2	0.4	0.3
	김순자 후보	0.6	-	-	-	-	0.1
	김소연 후보	0.4	0.2	-	-	-	0.1
	박종선 후보						
	무응답	4.3	1.0	6.7	12.4	13.7	7.7

II. 정책 제언

1. 고용

○ (실태) 대학, 병원, 아파트 등 민간부문에서 청소, 경비, 식당 업무는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이 일반적이며,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와 매년 반복적으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이에 비해 초중등학교, 구청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대부분 직접고용 기간제임. 초중등학교 식당 급식 업무는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2년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지만, 구청 등 지자체는 퇴직금 지급, 무기계약 전환 의무 등을 피하기 위해 기간제 계약기간을 1년 미만(64.6%)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서울시가 상시 지속적 업무로 간주해 무기계약 전환대상에 포함시킨 계약기간 9~11월(44.9%)도 절반가량 됨.

○ (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 박근혜 정부는 18대 대선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공약했음.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 일반화된 청소, 경비, 식당은 상시 지속적 업무임. 서울시는 이미 청소, 경비 업무를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있음. 정부는 직접고용이나 간접고용이나에 관계없이 공공부문부터 상시 지속적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대선 공약을 이행해야 함. 또한 기간제 보호법 시행령은 지나치게 많은 무기계약 전환대상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바, 시행령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함.

○ (55세 이상 고령자 무기계약 전환 예외 개정) 기간제 보호법 시행령은 55세 이상 고령자를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청소 경비 업무는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기간제가 일반적이며, 이들 업무 종사자는 대부분 55세 이상 고령자임.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아파트(92.5%), 대학(78.1%), 병원(49.8%)은 55세 이상 고령자가 절반이 넘음. 따라서 55세 이상 고령자를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한 기간제 보호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든가, 아니면 정년 연령에 맞춰 60세 이상으로 개정하는 게 필요함. 또한 청소, 경비 등 고령자 적합 업무는 정년을 65~70세로 연장하든가 정년 조항을 없애야 함.

○ (불법파견 근절) 병원에서는 간호조무, 조리배식, 시설관리 등의 업무에 직접고용 정규직과 외주업체 비정규직이 한데 뒤섞여 일하는 경우가 발견됨. 예컨대 병원 영양팀은 직접고용 영양사/조리사와 외주업체 조리원(조리배식)이 한데 뒤섞여 일하고 있

음. 외주업체 조리원은 직접고용 영양사/조리사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어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지게 됨.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 업무는 파견근로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일부 병원은 파견근로를 사용하고 있음. 정부는 수시점검과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불법파견을 근절해야 함.

○ (교육공무직법 제정) 학교 비정규직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도 스스로를 비정규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근로계약을 매년 반복 갱신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임. 법률상 사용자인 교육감은 사용자로서 권한과 의무를 학교장에게 미룸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들은 소속과 사용자가 불분명하고, 무기계약에 걸 맞는 직제나 임금체계도 부여받고 있지 못 함. 단체협약이나 조례를 통해 교육감 직접고용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 한다면 국회 입법을 통해서라도 교육감의 사용자 지위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해 학교 비정규직의 직제와 임금체계를 비롯해서,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 별로 공통된 사안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게 필요함.

○ (국시비 매칭사업) 국시비 매칭으로 재원(인건비)을 조달하는 자치구 기간제 노동자들은,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추가인건비 지원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 중앙정부와 업무 조정 등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르는 추가인건비 부담기준을 마련해야 함.

2. 임금 등 노동조건

○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 근속에 따른 호봉 상승이 없는 경우가 많음. 이처럼 임금수준이 낮고 생활상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고용안정보다 임금인상 욕구가 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일소하고 임금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① 최저임금 인상, ② 임금교섭을 통한 임금수준 인상, ③ 생활임금 제도(조례) 도입 등이 있음. 중장기적으로는 임금교섭이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지만, 노동조합이 거의 조직되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음. 이번 조사에서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적정임금은 150만원인데, 이는 서울시 공무직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수준과 비슷함. 2015년 법정 최저임금을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힘을 집중하는 게 필요함.

○ (직종별 표준임금)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시장은 최저임금을 제외하면 별다른 임금결정 기제가 없음. 이에 따라 동일 부문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임금수준이 다른 경우가 많음. 예컨대 서울시 본청, 서울지하철, 유노조 대학 청소 노동자들과 자치구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20-30만 원 가량 차이가 남. 노동조합 상급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비정규직 대표 직종을 선정해 시장임금 수준을 조사하고 표준임금을 제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게 필요함.

○ (복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복지 혜택은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음. 최우선적으로 식당과 휴게실, 탈의실 공간을 제공하고, 근무시간 중 식사와 경조사, 명절 상여금은 제공해야 할 것임.

○ (24시간 맞교대 근절) 아파트 경비 업무는 감시단속적 근로라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초과근로수당도 없고 시급은 최저임금의 90%만 적용됨. 60대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임에도 인체의 생체리듬에 반하는 1일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가 일반화되어 있음. 하지만 아파트 경비는 단순 감시 이외에 주차관리, 택배, 재활용 분리 등으로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의 승인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아파트 경비 업무를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하지 않도록 해야 함.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막으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24시간 맞교대 근무제를 근절해야 함. 아파트 관리비 중 경비비와 실제 지급한 월급여액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 바, 공동주택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정기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음. 이밖에 경비실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휴게공간과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함.

○ (근로기준법 등 사각지대 일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참여와협력증진법 등 각종 노동법 위반 사항이 비일비재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차적으로 노동부가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해야 하지만, 중앙정부 이외에 지방정부, 노사단체가 함께 노동법 준수를 위한 교육 홍보 상담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3. 노사관계

○ (노조효과 홍보) 아파트 경비의 임금수준은 유노조(147만원)가 무노조(118만원)보다 높고, 직접고용(139만원)이 간접고용(120만원)보다 높음.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노조 조합원의 임금이 비조합원보다 임금수준이 15% 높음.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법대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확률이 높고 근속년수도 길음.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 노조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노조 조직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경우가 많음. 노조 상급단체는 노조효과를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함과 동시에, 노조 조직화에 나서야 함. 정규직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간접고용 비조합원에게도 노조 사무실을 개방하고 법률상담이나 고충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병원처럼 교대제 근무가 많은 사업장은 나이트 담당 조합원의 출근시간에 맞춰 노조 사무실 개방시간을 새벽으로 조정한다든가 하여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접촉면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함.

- (노사협의회) 근로자참여와협력증진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함. 하지만 상시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사업장 가운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음. 중소기업체 비정규직은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 조직화가 쉽지 않은 바, 노사협의회를 통해서라도 노동자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요구를 수렴해 나가는 게 필요함.

4. 교육훈련

- (구 단위 노동복지 센터) 서울시가 4개 구에 설치한 노동복지센터 운영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앞으로도 지자체와 노동계가 협력해서 노동복지센터 설립을 확대하고, 법률상담과 교육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기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 (서울시 노동복지 센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육훈련이나 재취업 프로그램은 구 단위 노동복지 센터가 커버하기 어려움. 서울시 노동복지 센터를 설립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음.

[보론] 회귀분석 결과

1. 임금수준 결정요인

○ 같은 일을 해도 일하는 곳이 다르면 임금수준이 다름. 예컨대 청소 월평균임금은 구청(137만원), 대학(118만원), 병원(117만원), 학교(110만원), 아파트(80만원) 순임.

<표22> 부문 및 직업별 임금수준(평균값, 단위: 만원, 원)

		대학	병원	아파트	학교	구청	전체
월평균임금 (만원)	전문직	154	170	167	170	167	168
	사무직	117	138		183	139	152
	조리사	131	124		115	123	119
	청소	118	117	80	110	137	111
	경비	134	151	136	96	138	136
	기타	141	144	156	89	133	138
	전체	126	130	124	137	146	133
시간당 임금 (원)	전문직	6,056	9,803	7,579	10,017	9,522	9,631
	사무직	10,016	7,884		10,629	7,964	8,839
	조리사	6,869	6,657		6,701	7,093	6,730
	청소	8,477	6,397	5,377	6,303	7,425	7,163
	경비	6,364	7,347	5,122	5,903	7,574	5,890
	기타	7,223	6,450	6,681	6,726	7,556	6,869
	전체	7,807	6,719	5,225	8,074	8,292	7,254

○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일하는 곳에 따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월평균임금이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표23>과 <부표1>참조).

1) 여성 식당조리

- 학력, 규모, 근속, 경력이 여성 식당조리 노동자들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부문) 대학, 병원, 구청은 임금에 차이가 없지만 초중등학교는 12.4% 낮음.
- (고용형태)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0% 낮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22.1% 낮음.
- (노조효과) 노조 조합원은 무노조 비조합원보다 월평균임금이 5.0% 높음.

2) 여성 청소

- 학력, 혼인은 유의미하지 않음. 얼핏보면 근속과 경력이 유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만 계수 값의 부호가 반대 방향이어서, 결과적으로 미치는 영향 없음.
- (부문) 구청은 대학보다 7.6% 높고, 병원은 8.0%, 아파트는 13.2% 낮음

- (규모) 300인 이상 사업체는 300인 미만 사업체보다 20.6% 높음.
- (고용형태) 유의미한 차이 없음. 이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93.0%나 되기 때문.
- (노조효과) 조합원의 노조 임금효과는 15.7%.

3) 남성 경비

- 혼인, 가구주관계, 근속, 경력 유의미하지 않음.
- (부문) 아파트는 8.0% 높고, 대학, 병원, 구청은 차이가 없고, 학교는 26.6% 낮음. 아파트 경비는 시간당 임금은 가장 낮지만, 24시간 맞교대 때문에 월평균임금은 가장 높음.
- (노조효과) 조합원의 노조 임금효과는 15.3%.

<표23> 직업별 임금수준 결정요인 회귀분석(종속변수: 월임금총액)

	여성 식당조리	여성 청소	남성 경비
학력	×	×	○
혼인	○	×	×
가구주관계	○	○	×
근속	×	×	×
경력	×	×	×
부문	대학,병원,구청 >학교(-12.4%)	구청(+7.6%)>대학 ≒학교>병원(-8.0%) >아파트(-13.2%)	아파트(+8.0%) >대학,병원,구청 >학교(-26.6%)
300인 이상	×	+20.6%	+9.7%
직접/간접고용	직고(-9.0%), 간고(-22.1%)	×	×
		(∵ 간고가 93% 차지)	(∵ 간고가 대부분)
파트타임	-11.0%	-15.0%	×
노조 조합원 효과	+ 5.0%	+15.7%	+15.3%

2. 노조가입 결정요인

○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성, 연령, 학력, 혼인여부, 가구주관계 등 인적 속성과 사업장 규모, 임금수준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확률은 부문별로는 ‘병원>대학>학교>구청>아파트’ 순이고, 직업별로는 청소가 낮음. 고용형태별로는 ‘무기계약직>직접고용 비정규직>간접고용 비정규직’ 순이고,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노조가입 확률이 높음.

<부표1> 직업별 임금수준 결정요인 회귀분석(종속변수: 월임금총액 로그값)

	(모형1) 여성 식당조리			(모형2) 여성 청소			(모형3) 남성 경비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중졸이하	-0.051	0.307		0.037	0.525		-0.110	0.000	***
고졸	0.042	0.354		0.014	0.802		-0.080	0.003	**
전문대졸	0.070	0.240		0.062	0.411		-0.015	0.656	
기혼	-0.160	0.057		-0.049	0.519		-0.029	0.433	
사별이혼	-0.245	0.005	**	-0.094	0.227		-0.068	0.122	
배우자	-0.099	0.000	***	-0.039	0.031	*	-0.042	0.142	
기타가구원	-0.117	0.090		0.008	0.816		-0.012	0.655	
근속년수	0.013	0.143		-0.025	0.000	***	0.004	0.488	
근속제곱	0.000	0.728		0.002	0.000	***	0.000	0.911	
경력년수	0.011	0.170		0.018	0.001	***	-0.006	0.303	
경력제곱	-0.001	0.066		-0.001	0.012	*	0.000	0.563	
병원	-0.027	0.447		-0.083	0.000	***	0.035	0.332	
아파트				-0.142	0.000	***	0.077	0.024	*
학교	-0.132	0.000	***	-0.119	0.195		-0.310	0.000	***
구청	-0.067	0.312		0.074	0.018	*	0.017	0.616	
300인 이상	0.039	0.210		0.187	0.000	***	0.092	0.006	**
직접고용비정규직	-0.094	0.000	***	-0.085	0.139		-0.065	0.213	
간접고용비정규직	-0.250	0.000	***	-0.093	0.069		-0.092	0.068	
파트타임	-0.116	0.000	***	-0.162	0.000	***	0.021	0.471	
유노조비조합원	0.057	0.030	*	-0.040	0.032	*	-0.024	0.229	
유노조조합원	0.048	0.050	*	0.146	0.000	***	0.142	0.000	***
주당근로시간	0.009	0.000	***	0.012	0.000	***	0.001	0.029	*
상수	4.655	0.000	***	4.250	0.000		4.926	0.000	***
관측치	345			428			463		
모형설명력	0.507			0.750			0.323		

주: 대졸이상, 미혼, 가구주, 대학, 300인 미만, 무기계약직, 풀타임, 무노조를 기준더미로 해서 분석한 결과임.